

『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』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7년 3월 7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이유

-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).
- 나.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(안 제4조 ~ 안 제5조).
- 다.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(안 제6조).
- 라.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 지원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(안 제7조 ~ 안 제8조).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7일(금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,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23, 팩스 032-440-8764, 이메일 kbboss76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			
○성 명 :			
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(붙임1)
- 비용추계서 1부.(붙임2)

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 제27조의2」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
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
를 예방하는 등 노인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홀로 사는 노인”이란 주민등록상 거주지 및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
이 인천광역시 관내에 혼자 거주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

가.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

나.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

2. “부양의무자”란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)
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
다)를 말한다.

3. “고독사”란 홀로 임종을 맞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
는 죽음을 말한다.

4. “고독사위험노인”이란 홀로 사는 노인 중 건강상태, 경제상황, 사회
적 접촉빈도 등이 특히 취약하여 고독사의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
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행계획 수립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
3.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
4.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 및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내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한다. 단,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.

②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사업) 시장은 홀로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
1. 노인돌봄사업
2. 응급안전돌봄사업
3. 홀로사는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사업
4. 고독사 위험노인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사업

5. 고독사 위험노인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사업

6.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사업비 지원)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 등)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,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	○ 「노인복지법」 제27조의2 제27조의2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관련법규 정비대상	
관련자료	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노인복지법 제27조의2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2017년은 확정예산으로 작성하고 2018년~2021년은 연도별로 5%정도 상승된 추계금액으로 작성함

나. 추계 결과

- 노인돌봄관련 사업 전체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비고
계	8,643	9,075	9,529	10,005	10,506	
노인돌봄사업관련	8,643	9,075	9,529	10,005	10,506	- 기본·종합서비스 - 응급서비스 - 독거노인활성화 - 안심폰사업

다. 재원조달방안 : 국비 67% / 시비 15% / 군구비 18%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

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장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7년)	2차년도 (2018년)	3차년도 (2019년)	4차년도 (2020년)	5차년도 (2021년)	계
세입	△△△△ △△△△						
	소계						
세출	노인돌봄 사업	8,643,558	9,075,737	9,529,522	10,005,998	10,506,298	
	소계						
재원 조달							
국 비		5,776,130	6,064,937	6,368,183	6,686,592	7,020,922	
시비	소 계						
	일반회계	1,337,954	1,404,852	1,475,094	1,548,849	1,626,291	
	특별회계						
	기 금						
군·구비		1,529,474	1,605,948	1,686,245	1,770,557	1,859,085	
민 간							
기 타							